

27.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3년 9월 27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4일
- 상정일자 : 제304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23년 10월 17일),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안중곤 경제국장)

-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기능을 그 목적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근거 법령명 오기 정정(안 제1조)
- ‘대구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김재현)

#### □ 개정 취지 및 적법성 여부

-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4월 조례 개정을 통해 설치를 의무화한 ‘대구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라 한다.)가 조례 개정 후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행정안전부, ‘22. 7.)에 따라 신설이 억제됨으로써, 그 기능을 성격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이하 “노사민정협의회”라 한다.)에서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sup>17)</sup>과 자치사무의 범위 내에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 주요 검토사항

- 안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3항은 근로자권익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것임.
- 근로자권익위원회의 기능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려면, 두 위원회<sup>18)</sup>의 구성·역할 등에서 실질적인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임.

#### 17)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③ (생략)

-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8) 법령 입안 심사 기준(법제처, 2022)

-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표결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위원회는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도입, 이해의 조정이나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의사의 종합·협의·조정 등을 위해 설치된다.

위원회의 명칭에는 위원회 외에 심의회, 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 협의회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므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은 그 명칭에 의해 파악할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가 하는 행정작용이나 소관 사무, 행정조직상의 지위 또는 관련되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파악해야 한다.

- 먼저, 두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시 노동(노사)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있고,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서도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노동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위원회 구성에서 상당 부분 유사한 점이 있음.
- 또한,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지역 고용·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기능으로 고용차별 예방·개선, 일생활 균형정책 마련 등 근로자 권익증진과 관련된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근로자권익위원회와 노사민정협의회는 그 역할과 기능, 구성 등을 살펴볼 때 성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근로자권익위원회의 기능을 노사민정협의회에 대신하도록 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 각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비교 >

구분	근로자권익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역할 및 기능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1.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와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산업평화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고용·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	- 인원 : 15명 이내 - 당연직 : 노동업무 담당 국장 - 위촉직	< 본 협의회 > - 인원 : 30명 이내 - 당연직 : 시장(위원장), 지방고용노동

구분	근로자권익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노동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서 대표 공무원, 시 노사업무 담당국장 - 위촉직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분과위원회> <table border="1" data-bbox="943 663 1433 1180"> <tr> <td data-bbox="943 663 1062 745">고용증진</td> <td data-bbox="1062 663 1433 745">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td> </tr> <tr> <td data-bbox="943 745 1062 828">노사관계발전</td> <td data-bbox="1062 745 1433 828">노사협력 · 노사분규 갈등 예방</td> </tr> <tr> <td data-bbox="943 828 1062 911">차별개선일터혁신</td> <td data-bbox="1062 828 1433 911">기업 및 산업현장 고용차별 예방 및 개선</td> </tr> <tr> <td data-bbox="943 911 1062 994">공공분과</td> <td data-bbox="1062 911 1433 994">시 출자 · 출연기관 등 공공 부문 노사관계 안정·증진</td> </tr> <tr> <td data-bbox="943 994 1062 1077">인적자원개발</td> <td data-bbox="1062 994 1433 1077">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공급 방안</td> </tr> <tr> <td data-bbox="943 1077 1062 1180">일 생활균형</td> <td data-bbox="1062 1077 1433 1180">지역 일생활 균형정책 마련 및 확산 방안</td> </tr> </table>	고용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노사관계발전	노사협력 · 노사분규 갈등 예방	차별개선일터혁신	기업 및 산업현장 고용차별 예방 및 개선	공공분과	시 출자 · 출연기관 등 공공 부문 노사관계 안정·증진	인적자원개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공급 방안	일 생활균형	지역 일생활 균형정책 마련 및 확산 방안
고용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노사관계발전	노사협력 · 노사분규 갈등 예방													
차별개선일터혁신	기업 및 산업현장 고용차별 예방 및 개선													
공공분과	시 출자 · 출연기관 등 공공 부문 노사관계 안정·증진													
인적자원개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공급 방안													
일 생활균형	지역 일생활 균형정책 마련 및 확산 방안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자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기능을 그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와 노사민정협의회는 그 구성과 성격에서 상당 부분 유사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 기능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은 유사 위원회의 난립을 줄여 대구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음.

- 한편,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노사안정과 협력증진을 위한 최상위 협의체로서 노동계·경영계·민간·정부 등을 포괄하는 30명('23. 9월 현재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평균적으로 연간 1~2회 정도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음.
- 노사민정협의회의 많은 위원 수는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여 총괄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신속한 의사결정과 회의 개최에는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대신하여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과 자문에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조례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협의회의 근로자 권익보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참 고 대구고용노사민정협의회 일반현황

## ■ 협의회 개요

- 정 의 : 지역경제 주체인 노·사·민·정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일자리창출, 인적자원 개발, 지역 노사안정과 협력증진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운영하는 최상위 협의체
- 설치근거 :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주요기능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 산업평화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 고용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협의회 구성



구 분	본협의회	분과위원회					
		고용증진	노사관계 발전	차별개선 일터혁신	공공분과	인적자원개발	일생활균형
인 원	24명	11명	12명	11명	14명	24명	12명
위원장	대 구 광역시장	대구고용복지 +센터소장	대구지방 고용노동청장	노사발전재단 대구사무소장	대구시 경제부시장	공동위원장 (대구상의회장 외 3)	대구행복진흥 사회서비스원장

## 참 고

## 대구고용·노사민정협의회(본 협의회) 위원 명단

연번	위 원	소 속	직 책	성 명		
1	위원장	대구광역시	시 장	홍준표		
2	위 원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의 장	김위상		
3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분 부 장	윤삼명		
4		노동계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	위 원 장	정병화	
5		KT노동조합 대구지방본부	분 부 장	이영태		
6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대구지부	지 부 장	김영태		
7		경영계	대구경영자총협회	회 장	김인남	
8			대구상공회의소	회 장	이재하	
9			(주)다담	대 표	이성월	
10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 사 장	성태근	
11			대구경북철콘협의회	회 장	박중현	
12			(주)구영테크	회 장	이희화	
13			대흥코스텍(주)	대 표	진덕수	
14			언론계	영남일보 교육인재개발원	원 장	최종철
15		민 간	대구변호사회	변 호 사	김익환	
16			대구YWCA	사무총장	최윤정	
17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원 장	정순천	
18			계명대 행정학과	교 수	김복규	
19			대구대 경제학과	교 수	김용원	
20			정 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청 장	김규석
21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 장	원영준
22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분 부 장	천학기
23				노사발전재단 영남지사	지 사 장	김혜은
24				대구광역시 경제국	국 장	안중곤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 없음.

#### 5. 토론요지

- 해당 없음.

#### 6. 수정안 요지

- 해당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